

|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|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(대학원,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을 통칭한다)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삼육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발 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기관, 외부 장학재단, 외부단체 및 개인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 단, 계약학과인 경우 계약학과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. <2023. 2. 13.>

제3조 (사무관장)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, 장학금 재정관리는 사무처장이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대학원장이 관장한다.

제4조 (일반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2장 대학원위원회

제5조 (구성)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 <개정: 2018. 02. 28.>

-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,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.
- ② 위원은 대학원장, 신학대학원장, 경영대학원장, 임상간호대학원장, 대학원 부원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재무실장, 학과장 2인,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단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. <개정: 2018. 02. 28.>

- ① 장학금 지급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②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종류별 지급액, 지급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
- ③ 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장학금 종류와 수혜내용

제8조 (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)

-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[별표 1]과 같다.
<개정: 2018. 02. 28., 2020. 04. 06., 2021. 01. 04., 2022. 03. 07.>
- ② 연구조교장학금,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
<개정: 2020. 04. 06.>
-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. 단,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(재단 등)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03. 07.>
-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. <신설 2022. 03. 07.>
-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(단,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) <신설 2022. 03. 07.>
-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.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. <신설 2022. 03. 07.>

제9조 (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) 교외 장학금의 수혜자격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라 선발 추천한다.

제10조 (수혜기간) 장학금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, 교외 장학금은 지급 기관 및 단체의 장학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 (장학금 신청)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장 장학금 지급 및 관리

제12조 (장학금 지급)

- ①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, 장학생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장학금은 매 학기 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 (장학금 지급 중지)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① 학칙에 의거 징계처벌을 받은 자
- ② 휴학, 자퇴 및 제적된 자
- ③ 기타 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자

제14조 (장학금 지급 제한)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

은 등록금의 50%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.

① 진학장학금, 기타장학금, 장애인장학금, 입학성적우수장학금, 교육이념구현장학금

<개정: 2022. 03. 07.>

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

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

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8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9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1. 【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】<개정: 2022. 12. 19.>

구분	대상자	지급 기준	지급액
입학성적 장학금	전기,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	등록생 5명 이상 학과의 입학 성적 1위 (정원외, 추가모집 제외)	수업료의 20%
입학금감면 장학금	본교 교직원 본인 본교 석사출신 박사과정 입학생 본 대학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편입학한 자 본교 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	직원: 직원인사위원회 결의자 교수: 교원인사위원회 결의자	입학금
장려장학금	학위과정생(정원외 및 목회자양성·향학 장학수혜자 제외)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 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수업료의 20%
진학장학금	A: 석사과정 신입생 중 입학일 기준 7개월 이내 본교 졸업자 *석박사통합과정, 학석사연계과정 해당 없음	A: 입학 첫 학기, 마지막 학기 (목회자양성·외국인장학금수혜자 제외)	A:수업료의 60% (박사과정 50%, 장려장학금 포함)
	B: 본교 평생교육원 12학점 이상 이수자	B: 입학 첫 학기	B:수업료의 10%
외국인장학금	정원외 외국인 재학생 (이중언어과정 제외)	A: 직전학기 성적 4.0이상	A:수업료의 50%
		B: 직전학기 성적 3.5이상	B:수업료의 40%
		C: 직전학기 성적 3.0이상	C:수업료의 20%
	이중언어과정 정규학기 재학생 중 대학원이 추천한 자	논문을 제외한 학위수여 요건 충족자로서 TOPIK 4급(예체능 3급) 이상 취득 또는 한국어 과정 600시간 이상 이수	수업료의 50%
교육지원조교 장학금*	재학생 중 이중언어과정 운영학과 추천자	20명 이상일 때 최대 2명	월 500,000원
국제학생멘토 장학금	이중언어과정 운영학과 소속 외국인 학생 중 멘토로 승인되어 위촉된 자	멘티 최대 5명까지 학기 말에 지급, 상황에 따라 학기별 분할 지급 가능	멘티1인 당 수업료의 10%
장애인장학금	A: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국가 장애인 등급 기준	A:수업료의 30%
	B: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B:수업료의 10%
교직원장학금	본교 교직원 본인, 배우자, 자녀 (직원: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, 교수: 전임교원)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수업료의 20%
교역자장학금	한국연합회 산하 정규직 교역자 본인, 배우자 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이사장 추천자로 연간 2인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수업료의 20%
공무원장학금	7급 이상 공무원 및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한 동등 자격자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수업료의 20%

학과추천 장학금	학위과정별 학과 재학생 5명 이상 학과의 추천 1인(학위과정별 학과 재학생이 20명 이상일 때 1인, 40명 이상일 때 2인 추가 선정)	*직전학기 성적기준 석사: 3.5이상 박사/통합과정: 3.75이상	수업료의 20%
연구조교 장학금*	학위과정생	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에 따름	A: 월 800,000원 B: 월 500,000원
수업지원조교 장학금*	학위과정생	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에 따름	월 300,000원
원우회임원 장학금*	A: 원우회 회장 B: 원우회 부회장	재학생 수 20명 이상	A:수업료의 10% B:수업료의 5%
교육이념구현 장학금*	본교 전임교원	신학과 석사과정 진학	수업료의 20%
문서전도*	문서전도에 참여한 재학생	문서전도 참여자	총 판매액의 5%
목회자양성 장학금	-	한국연합회 장학규정에 따름	-
목회자향학 장학금	-	한국연합회 장학규정에 따름	-
산학협력 장학금	임상간호대학원 재학생	국립암센터 및 원자력의학원 재직	수업료의 10%
계약학과 산학협력 장학금	계약학과 재학생	산업체 계약	수업료의 20%
기타장학금	-	별도 협약에 따름	-

*교직원장학금, 교역자장학금, 공무원장학금, 산학협력장학금 중 1개만 선택, 중복 지급 불가